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8663
----------	-------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2026년 7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이 시행되면서, 1995년 이후 31년간 유지되어 온 2군·8구 체제가 2군·9구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하여 제물포구를 설치하고, 바다를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된 중구 섬지역에는 영종구를 신설하며, 현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임.

이와같이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함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기초의회 의원 최소정수 7인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6년 4월 18일 의결된 법률 제2157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광역시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종전보다 3명 증원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자치구 신설에 따른 변화까지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어렵다

는 측면이 있어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성 제고 차원에서 추가적인 증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와 인천광역시의 총정수를 각각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현행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 및 인천광역시의 총정수를 각각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현행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함([별표 3]).

나. 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고, 획정안 제출일자를 이 법 시행 후 1일까지로, 조례안 의결일을 이 법 시행 후 2일까지로 함(부칙 제18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3,003명”을 “3,006명”으로 한다.

별표 3의 인천광역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128
-------	-----

법률 제2157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 중 “이 법 및 부칙 제7조(법률 제2157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포함한다)”를 “이 법, 부칙 제7조(법률 제2157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포함한다) 및 제18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제24조의3제8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획정위원회가 개정 공직선거법(법률 제00000호) 및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다시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에서 제24조의3제5항 및 부칙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1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의회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신 설>

례) ① 제24조의3제8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임기는 획정위원회가 개정 공직선거법(법률 제00000호) 및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인천광역시시장에게 다시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제24조의3제5항 및 부칙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1일까지 인천광역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의회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